



企業經營의 合理와 效能을 爲해 알
기 쉽게 엮어 가는 税金特講을 連
載한다.

相續稅란 무엇인가?
納稅義務者란?
贈與稅란 무엇인가?
課稅財產이란?

企業經營과 税金講話 7



李 文 宰
慶熙大 經營行政大學院 教授

第6講 相續稅와 贈與稅 (2)

IV. 課稅價格

1. 課稅價格의 計算

相續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課稅價格은 다음의 算式으로 計算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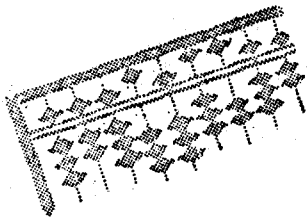
① 無制限納稅義務의 경우

無制限納稅義務인 경우 곧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때에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相續財產의 價格)+(相續開始前 1年內에 한 贈與의 價格)+(看做相續財產의 價格)} - {(基礎控除 300萬圓)+(公課金)+(葬禮費用)+(債務)+(非課稅財產의 價格)+(扶養家族控除)} = 課稅價格

算式에 대해서 若干 言及한다면 相續財產의 價格에 相續開始前 1年內에 被相續人이 그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한 贈與의 價格과 相續財產으로 看做하는 價格을 加하고 거기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것을 得稅價格으로 한다는 것이다.

ㄱ. 基礎控除 300萬圓



ㄷ.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ㄸ. 債務(相續開始前 1年以內에 생긴 贈與의 債務을 除外한다)

ㄹ. 非課稅로 되는 財産의 價格(註1)

ㄱ. 扶養家族에 대한 法定 控除額(註2)
(註1) 非課稅財産

다음 財産의 價格은 相續稅의 課稅 價格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財産에서 생기는 利益의 全部 또는 1部가 相續人, 被相續人 또는 그 親族에게 歸屬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ㄴ.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産

ㄷ. 出捐者나 그 親族 또는 出捐者와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理事로 되어있지 않고 運營되는 宗教事業·慈善事業·學術事業 기타 公益事業에 出捐하는 財産

ㄸ. 民法上 扶養義務者 相互間의 治療費, 生活費 또는 教育費로서 亘常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金品

ㄹ. 罹災救濟金品 기타 不遇한 者를 도움기 위한 金品으로서 20萬원 미만의 것

ㄱ. 政黨法의 規定에 의한 政黨에 贈與 또는 遺贈한 財産

ㄴ. 紀念品, 祝賀金, 賦儀金, 婚需用品 기타 이에 類似한 金品으로서 20萬원 미만의 것.

ㄷ. 民法第996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 및 公務員 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遺族扶助金과 遺族1時金

(註2) 扶養家族控除

相續開始當時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同居家族 및 相續人中 未成年者, 60歲以上 年者 또는 不具癱疾者 가 있는 경우에 다음 區分의 金額을 課稅價格에서 控除한다.

ㄴ. 配偶者: 150萬원

ㄷ. 未成年者: 20萬원과 20歲에 達한에 까지의 年數에 5萬원을 곱한 金額의 合計額

ㄸ. 年老者: 40만원

ㄹ. 不具癱疾者: 40만원

여기에서 同居家族이라 함은 被相續人이 事實上 扶養하고 있던 直系尊卑屬을 말하며 ㄱ.에 該當하는 事項이 ㄴ. ㄷ. ㄸ.에 該當하는 事項과 重複되는 경우에는 이를 合算한 金額을 控除한다.

② 制限納稅義務의 경우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課稅되는 相續財産의 價格)+(相續開始前 1年內에 한 贈與의 價格)} - {(基礎控除 300萬원) + (그 財産에 대한 公課金) + (그 財産을 目的으로하는 留置權, 質權, 抵當權으로서 担保된 債務) + (그 財産에 관하여 相續開始 1年前에 생긴 贈與의 義務)} = 課稅價格

그리고 相續財産價格에 加算한 相續開始前 1年以內에 被相續人이 그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의 者에게 한 贈與가 있을 때 그 贈與에 대한 贈與稅額은 納付하는 相續稅額에서 控除한다. 또한 課稅價格計算에 있어서 控除事項인 被相續人의 債務는 稅務署長이 確實하다고 認定하는 것에 限하게 되어 있음으로 公信用있는 債務의 証言이 必要하다.

2. 課稅價格의 評價

① 一般財産

相續財産의 價額과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의 價額과 相續財産의 價額中에서 控除할 公課 또는 債務는 相續開始日 當時의 現況에 의한다. 다만 失踪 宣告로 인한 相續의 경우에는 死亡한 것으로 看做되는 當時 곧 失踪宣告日의 現況에 의한다.

相續開始 當時의 現況에 의한 價額이란 原則적으로 그 當時의 時價이며 時價를 算定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제기하는 바의 價額을 참작하여 이를 算定한다.

ㄴ. 土地의 評價는 土地別로 事實상의 地目에 따라 不動產 및 船舶에 관한 登錄稅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한다. 다만 都市計劃事業등 客觀적으로 明白한 事由로 인하여 時價標準額과 顯著히 差異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差額을 公제하여 評價한다.

ㄷ. 建物과 船舶의 評價는 不動產 및 船舶에 관한 登錄稅時價標準額에 의한다.

ㄸ. 施設物 기타 構築物(土地 또는 建物과 一括하여 評價하는것을 除外한다)의 評價는 그것을 다 시 建築할 때 所要된다고 予想되는 價額에서 그것의 設置時期로 부터 相續開始日까지의 減價償却費를 控除한 價額에 의한다.

ㄹ. 商品, 製品, 半製品, 在工品, 原材料 기타 이에 準하는 動産의 評價는 그것을 處分할 때에 取得할 수 있다고 予想되는 價額에 의한다.

ㅁ. 所有權의 對象이 되는 動物의 評價는 前號의 규정을 準用한다.

ㅂ. 販賣用이 아닌 書畵, 骨董品의 評價는 專問家의 鑑定에 의한다.

ㄷ. 買入한 無體財産權의 評價는 買入價額에서 買入時期로부터 相續開始日 까지의 減價償却費를 控除한 價額에 의한다.

ㄹ. 前號以外的 無體財産權의 評價는

(1) 營業權의 評價는 다음 算式에 의한다. 다만 買入한 無體財産權으로서 그 性質上 營業權에 包含시켜 評價되는 無體財産權의 價額은 다음의 評價額에서 控除한다.

$$\{ \text{平均純利益} \times \frac{1}{2} - \text{相續開始日 現在の 自己資本} \times \text{定期預金利率} \times \frac{1}{2} \} \times \text{相續開始日 以後의 營業權의 持續年數}$$
(原則적으로 5年으로 한다)

(2) 特許權, 實用新案權, 商標權의 評價는 權利者가 스스로 特許權등을 實施하고 있는 경우에는 營業權에 包含시키며 權利者가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고 補償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로부터 그 權利의 存續期間이 滿了할때까지의 補償金の 合計額에 의한다.

(3) 著作權의 評價는 그 權利에 의하여 將來 未稅 印花稅 기타 補償金에 의한다.

(4) 鑛業權과 採石權등의 評價는 操業할 수 있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 前 3年間 平均純所得(實績이 없는 경우에는 予想 純所得)에 相續開始日 以後의 採掘可能年數를 兼한 價額에 의하고, 操業할 處理가 없는 경우에는 設備등만 評價한다.

(5) 漁業權의 評價는 營業權에 包含시켜 行한다.

ㅈ. 有價証券의 評價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株式과 出資持分의 評價는

上均株式의 경우 = 相續開始日 前 1個月間에 分布된 每日의 証券去來所 最終時勢價額 (去來實績有無를 不問한다)의 平均價額과 相續開始日의 証券去來所 最終時勢價額中 낮은 價額

無上均株式의 경우 = 相續開始日 現在の 資産을 相續財産價額 評價方法에 의하여 評價額에서 負

債를 控除한 當該法人의 純資産價額을 株式總數로 나누어 1株當 價額을 計算한다. 다만 純資産價額은 公信用있는 鑑定機關의 時價鑑定法에 의할수 있다.

(2) 國債, 公債, 社債의 評價는 株式評價의 上均株式의 경우에 따른다. 다만 証券去來所에 上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實際買入價額에 相續開始日까지의 未受利子 相當額을 加算한 金額에 의한다.

(3) 預金, 積金 또는 積金の 評價는 相續開始日에 있어서의 預入總額과 同時期現在 이미 經過한 未受利子額의 合計額에 의한다.

(4) 貸付金 債權의 評價는 元本과 相續開始日 現在까지의 未受利子額의 合計額에 의한다. 다만 貸付金債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相續開始日 現在 回收不能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그 價額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地上權·定期金등

相續財産에 있어서 地上權이나 定期金등의 價額은 다음의 方法으로 이를 評價한다.

ㄱ. 地上權에 대하여는 다음의 金額을 그 價額으로 한다.

(1) 殘存期間 10年 以下の 것 - 地上權의 目的인 土地의 貸貸價額의 2倍

(2) 殘存期間 30年 以下の 것 - 地上權의 目的인 土地의 貸貸價額의 3倍

(3) 殘存期間 50年 以下の 것 또는 存續期間이 定하여 있지 아니한 것 - 地上權의 目的인 土地의 貸貸價額의 5倍

(4) 殘存期間 100年 以下の 것 - 地上權의 目的인 土地의 貸貸價額의 7倍

(5) 殘存期間 100年 보다 長期인 것 - 地上權의 目的인 土地의 貸貸價額의 12倍

ㄴ. 有期定期金은 그 殘存期間에 대한 總金額을 그 價額으로 한다. 다만 1年의 定期金의 20倍를 超過할 수 없다.

ㄷ. 無期定期金은 그 1年의 定期金의 20倍를 그 價額으로 한다.

ㄹ. 終身定期金은 그 目的으로 된 者의 年令에 의하여 다음의 期間에 대한 定期金의 總額을 그 價額으로 한다.

20歲未滿의 者 10年

30歲	〃	8年
40歲	〃	6年
50歲	〃	4年
60歲	〃	2年
70歲以上의 者		1年

위에서 土地의 貸賃價額이라 함은 貸主가 公課 修練費 기타 土地의 維持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할 條件으로 이를 貸付하는 경우에 貸主가 取得할 1年分의 金額을 말한다.

③ 條件, 附權利, 訴訟中の 權利등

條件附權利, 存續期間의 不確定한 權利,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 또는 訴訟中の 權利의 價額은 다음 方法에 의하여 評價한다.

ㄱ. 條件附權利는 本來의 權利의 價額을 基礎로 하여 條件內容을 構成하는 事實, 條件成就의 確定性 기타 諸般事情을 參작한 適正한 價額

ㄴ.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는 그 權利의 性質目的의 耐用年數 기타 諸般事情을 參작한 適正한 價額

ㄷ.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의 評價는 다음區分에 의한다.

(1) 元本의 受益者와 受益의 受益者가 同人일 때에는 相續開始日 現在의 信託財産의 價額, 다만 受益者가 多數人일 경우에는 各者의 持分에 따라 計算한다.

(2) 元本의 受益者와 受益의 受益者가 다른 때에는 元本의 受益者에게는 相續開始日 現在의 元本의 價額으로 하고 受益의 受益者에게는 將來 받을 受益의 合計額을 그 價額으로 한다.

ㄹ. 訴訟中の 權利는 紛爭關係의 眞相을 調査하고 訴訟進行의 狀況을 參작한 適正의 價額

3. 免稅點

相續稅는 課稅價額에서 基礎控除와 扶養家族控除 등을 한 金額이 20萬圓 미만인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한다.

V. 相續稅의 減免

1. 全額減免

戰死 및 이에 準할 死亡 또는 戰爭 및 이에 準할

公務로 인하여 받은 傷痍疾病으로 인한 死亡으로 相續이 開始하였을 때에는 相續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다만 傷痍者 또는 疾病者로서 負傷 또는 發病後 1年을 經過하여 死亡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여기에서 戰爭에 準할 公務라 함은 事變 또는 이에 準할 非常事態로 인하여 討伐 또는 警備의 任務에 從事하는 事務를 말한다. 또한 戰死에 準할 死亡이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바의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것을 말한다.

2. 一部免除

① 連次相續控除

相續稅를 賦課할 相續이 開始한 後 7年 以內에 또다시 相續이 開始되었을 때에는 前課稅價額中 相續한 分에 대한 前의 相續稅에 相當한 相續稅의 全額을 免除한다.

또한 10年以內에 또다시 相續이 開始되었을 때에는 前課稅價額中 相續한 分에 대한 相續稅의 半額에 相當한 相續稅를 免除한다.

그러나 前의 課稅價額中 相續한 것이 後의 相續에 대한 課稅額을 초과한 때에는 相續開始 7年以內인 경우에는 그 초과額에 대한 前 相續稅에 相當하는 金額, 10年以內인 경우에는 그 半額에 대해서는 例外로 한다.

② 在外財産의 相續稅 控除

外國에 있는 相續財産에 대하여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받은 때에는 相續稅法에 의하여 賦課되는 相續稅額中 外國에 있는 相續財産으로서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받은 財産의 價額과 相續稅法에 의하여 相續稅가 課稅되는 總財産價額의 比率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

그러나 그 金額은 外國에 있는 相續財産에 대하여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賦課받은 金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속)